2024년도 제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4. 1. 31.(수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강태욱(분과위원장), 김경숙, 김상수, 정경오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3건(안건번호 제2024-899호~제2024-95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899호(순번 1번)는 원저작물의 시장가치 현존 여부에 다소 의문은 있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자의 복제·전송권 및 잠재적인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분명한 점, 원저작물이 차츰 인기를 얻어 공중에 확산될 경우 상업적 성격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저작권자가 원저작물을 최초로 공표할 당시 무료로 공표하였던 점 등 현존하는 위험성의 정도를 참작하여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4-900호(순번 2번)는 카페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관련 정보를 도용하여 게시한 사안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전송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를 통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는 점, 권리자가 수개월 간 반복적으로 중단요청 및 경고를 하였으나 복제·전송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901호(순번 3번)는 클라우드에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공정이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해당성이 발견되지 않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902호~903호(순번 4번~5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904호~923호(순번 6번~25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924호~958호(순번 26번~60번)는 카페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176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4-801호~976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2개에 접속할 수 있는 168개의 URL 정보에 관

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하고, 심의 대상 URL 정보가 대체사이트 접속 정보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한 정보 8개에 대해서는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강태욱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강태욱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이숙형 부장: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은 전부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4쪽 내지 1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이숙형 부장: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태욱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이숙형 부장: 금일 심의안건은 11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7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에 웹툰이 게시된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오로지 공중의 감상에 제공할 목적으로 원저작물의 전부를 전재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하단에는 출처로 보이는 링크가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작가의 원작이 게시된 원게시물이 아

닌 작가의 원저작물을 복제·전송한 또 다른 웹사이트로 이어지는 링크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블로그는 다수의 웹툰을 무단 게재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블로그는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파악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본 사안에 대한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로는 저작자에게 복제권, 전송권 및 이를 잠재적으로 상업화할 저작재산권이 귀속됨이 분명한 점, 원저작물은 공중의 감상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저작자가 타인의 자유로운 복제·전송까지 허락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창작자가 창작할 당시에는 비상업적 저작물로 시작하더라도 차츰 인기를 얻어 상업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전문 창작자의 경우에는 개인 SNS 등 비상업적인 방식을 통하여 창작물을 공표하였다 하더라도 영리적 성격을 띠는 창작 활동과 직접 결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이러한 연결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 마찬가지로 본 게시물이 비상업적 방식으로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차츰 인기를 얻어 공중에 확산될 경우 상업적 성격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원저작물이 상업적 성격을 가지게 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온라인상의 다량 불법복제를 용이하게 만들 소지가 큰 점 등이 있음.

  본 사안에 대한 시정권고의 소극적 요소로는 현재 시점에서 원저작자

의 해당 저작물에 대한 상업화 의사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저작물의 시장가치가 현존하는지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 있는 점, 복제·전송에 대한 저작자의 허락 여부 및 직접 구제 시도 등이 저작자에 의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한 점 등을 들 수 있음.

종합하면, 원저작물의 시장가치 현존 여부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자의 복제·전송권 및 잠재적인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분명한 점, 원저작물이 차츰 인기를 얻어 공중에 확산될 경우 상업적 성격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계속하여 남아 있는 경우 온라인상의 다량 불법복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현존하는 위험의 정도에 비추어 게시자에게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하는 바임. 추후 순번 1번과 유사 사례가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순번 1번이 게시된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을 보면 다량의 단편만화가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다량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있어 원저작자가 유명해질 경우 원저작물이 상업적 성격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하는 것보다는 시정권고의 가결함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됨.

- 박현주 변호사: 저작권자가 원저작물을 최초로 공표할 당시엔 무료

로 공표하였던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 B 위원: 그 부분까지 고려하면 검토 의견에 동의하는 바임.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위원: 시정권고 제도가 마련될 때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업적 저작물에 대한 신속한 보호수단의 마련이 주된 입법 취지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검토보고 내용처럼 심의대상 게시물이 계속하여 남아 있는 경우 온라인상 다량의 불법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는 정도로 복제 ·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은 권리자가 직접 신고한 건으로, 권리자가 작성한 아파트 실거래 정보 게시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카페에 게시한 사안이며, 총 1건임.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공중에 제공할 목적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아파트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작성된 아파트 실거래가 등 부동산 정보 게시글 내용 전부를 캡처하여 게시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본의 출처는 밝히고 있으나, 게시물 상·하단에 카페 자체 광고를 게시하여 수익을 얻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게시물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부동산 정보에 대하여 캡처한 후 순서만 다르게 게시하고 있음.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물을 캡처 복제 후 나열 순서만을 수정한 것으로 이러한 원저작물의 변형은 2차적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권리자는 심의대상 게시글 작성자가 허락을 득하지 않고 자신의 원게시물을 무단 복제·전송한 점과 관련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게시자에게 수개월 간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복제·전송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원게시물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중인 정보 등을 토대로 국내 일부 지역의 정보가 한 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보이도록 페이지를 구성하였고, 실거래가와 관련된 정보를 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음. 이처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내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작성자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취합하고 분석한 원게시물은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로 판단됨.

원게시물은 공중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원게시물 작성자는 해당 게시물을 제공하는 홈페이지 내 배너, 팝업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음. 원게시물 작성자가 원게시물을 무료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타인의 변형, 전재 등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취지는 아님. 실제로 권리자가 그 허락을 득하지 않고 무단 전재한 점을 들어 신고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음.
종합하면, 원게시물이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전송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 이를 통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는 점, 권리자가 수개월 간 반복적으로 중단요청 및 경고를 하였으나 복제·전송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및 배포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C, D 위원: 이견 없음.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클라우드에 일본 애니메이션 및 리액션 영상을 함께 게시한 사안이며, 총 1개 게시물임.
(순번 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전송중인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전송중인 영상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리액션 콘텐츠에, 해당 애니메이션을 삽입하여 편집한 것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심의대상 게시물은 상업 목적의 저작물인 애니메이션은 물론, 애니메이션에 대한 리액션 영상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각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상업적 저작물인 두 개의 영상을 합쳐 전송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번~5

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뮤지컬 불법복제물의 교환·판매 거래글이 블로그에 게시된 사안임. 총 2개 게시물임.

(순번 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블로그에 뮤지컬 밀캠(현장공연을 몰래 녹화하는 행위),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영상 등을 교환 또는 판매하고 있음. 게시물에는 게시자가 보유한 녹화물 등의 제목, 공연일, 출연자 목록 등이 다수 게시되어 있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며, 현장 공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교환 또는 판매를 위해 전송하는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현장공연 녹음·녹화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한 파일이나, 권리자에 의해 이미 영상물 또는 음반으로 고정된 DVD, OST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한 파일 모두 보호원의 시정권고 대상인 불법복제물로 판단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일반 블로그 게시물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쇼핑몰의 제품 판매 게시물과 동일하게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것임. 게시물의 내용 및 비밀댓글 개수에 비추어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가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하였으며, 이러한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비추어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어 시정권고의 대상이되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경우에는 게시자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순번 4번 내지 5번은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중인 것은 아니나, 뮤지컬 불법복제물을 교환 또는 판매한다는 거래글을 게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정보로 판단되어 시정권고의 대상이되므로 가결 의견임.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번~2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30개 게시물임.
(순번 9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자 하는 의사가 뚜렷하여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들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순번 6번~25번의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pdf 파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로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여 영리를 얻고자 함이 분명하므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A, B,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번~2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

으로 의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6번~60번은 실명의 민원인 3명이 신고한 건으로, 카페 및 웹하드 사이트에 방송물, 만화 등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이며, 총 43건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6번~6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4-899호(순번 1번)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4-900호(순번 2번)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4-901호(순번 3번)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4-902호~903호(순번 4번~5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4-904호~923호(순번 6번~25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4-924호~958호(순번 26번~60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3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6쪽부터 19쪽은「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4-801호~968호(순번 1번~168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4-969호~976호(순번 169번~176번)는 부결함.”

4. 폐회 선언

o 강태욱 분과위원장이 제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2. 14.

분과위원장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김상수

위원 정경오